

일본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의 수용과 변용, 한국에서의 함의

전호성 강남대학교

논문요약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주제어 : 한국의 사회보장, 일본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사회적 안녕, 생활의 보장

I. 들어가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의미 혹은 정의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된다. 이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때때로 사회복지와 혼용 또는 혼동되기도 하는데, 그 실례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전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2003년부터 시행되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삭제되고 신설된 것이었다. 그러나 두 계획은 내용상의 별다른 차이 없이 사회복지가 사회보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이는 당시 입법을 추진한 관계자들 혹은 정부가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이란 두 용어의 의미를 구분 짓지 못하고 있거나, 혼용 또는 혼동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¹⁾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은 하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사회복지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그 의미 또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용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유래되었으나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연구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용어의 의미와 정의 여부, 그에 따른 상하위 개념의 재정립은 우리나라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의 틀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않은 상태이다.

1)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전호성 외 3명(2015)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분류 체계 개편 연구」보건복지부를 참조바람.

다만, 선행연구로 사회보장의 개념과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로는 유광호(1985)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사회보장의 개념성립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에 관한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특히 사회보장을 경제보장, 정치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프로그램, 사회정책적 제도로 구분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의 예시를 들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광호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에서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용어가 생성된 점과 용어자체의 어원에 대하여 언급한 점과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사용된 사회보장의 개념이나 용어의 정착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는 전호성(2015, 2016, 2018), 전호성/이홍직(2016)의 연구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 사회보장 정의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사회보장권적 기본권 차원에서의 사회보장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 또한 본 연구의 사회보장 용어에 대한 원론적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에 놓여있는 일본의 경우, 일본국 헌법 제25조 제2항에서 “국가는 모든 생활부면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²⁾”고 규정하며 사회복지, 사회보장, 공중위생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 의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1950년 10월16일)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 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7월17일 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제헌헌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헌법 제6호(1962년 12월26일 전부개정, 1963년 12월17일 시행) 제30조에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화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보장이란 용어가 어떻게 헌법에 명문

2) 원문은 国は、すべての生活部面につ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화되었는지 그 의미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는 대한 연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1946년 11월3일에 공포되고, 1947년 5월3일에 공포된 일본국헌법 제25조 제2항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하지만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헌법에 명문화되었는지 그 유래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타바(北場勉)에 명확히 밝혀진 상태이다(北場 勉 2002, 69-109). 기타바(北場勉)는 일본국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내용과 유래를 맥아더 헌법초안과 미국의 뉴딜정책 당시의 대통령인 루즈벨트의 의회 특별교서를 통하여 분석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기타바(北場勉) 연구에 근거하여 일본의 사회보장에 관한 의미와 정의, 그리고 유래에 대한 재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함께 내포하여야 할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추후 후속연구로 이어질 사회복지 용어의 유래와 의미에 더하여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재정립의 기초연구로 삼고자 한다.

II. 용어의 표기(차용의 오류와 한계)

1. 사회보장 & 社会保障(しゃかいほしょう:사카이 호쇼) & Social Security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인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한자로는 社會保障, 영어로는 social security에 해당된다. 특히 한글표기하고 있는 사회보장을 한자로 표기하면 社會保障으로 이는 영문인 social security를 한자 뜻을 빌려 표기한 것으로 중국어가 아닌 일본어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인 社会保障(しゃかいほしょう:사카이 호쇼)을 우리말로 그대로 읽어 사회보장이란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다보니 본래의 의미인 사회보장의 의미 내지는 내포하고 있는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 한 예로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

른 사회보장의 정의를 하위법령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법인 「사회보장에관한법률」³⁾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험에 의한 제공여와 무상으로 행하는 공적부조를 말한다”(사회보장에관한법률 제2조)고 단순하게 규정하는데 그쳤다.⁴⁾ 다시 말해서 사회보장의 의미를 극히 단순화 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공공부조)만으로 해석 혹은 정의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필자로 하여금 영어인 social security가 일본어인 社會保障으로 번역되고, 이것이 다시 한글로 사회보장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실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퇴색 혹은 변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일본의 「社會保障」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으로 사용되었다고 것은 기술既述한 유광호의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증명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넘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의 정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일본의 「社會保障」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었는가 고찰하는 것은 나름의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여겨지며 후술後述하기로 하자.

2. 텀블러(Tumbler) & 보온병(保溫瓶) & 마호병(魔法瓶)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와는 전혀 별개이지만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일상적으로 수용되고 변용된 용어로 보온병(마호병)의 예를 들어보자.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굽과 손잡이가 없고 바닥이 납작한 큰 잔”을 텀블러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우리생활에서

3) 법률 제1437호, 1963년 11월5일 제정, 1963년 11월5일 시행.

4) 이는 그 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법(법률 제5134호, 1995년 12월30일 제정, 1996년 7월1일 시행)과 전부개정법(법률 제11238호, 2012년 1월26일 전부개정, 2013년 1월27일 시행)에 의하여 그 정의는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텀블러는 이전까지 혹은 지금도 보온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병”으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보온병의 전신으로 일본어를 그대로 차용한 마호병은 명사로 “물 따위를 넣어서 보온이나 보냉이 가능하게 만든 병”이라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일본어인 마호병이란 무슨 의미일까?

마호병이란 서양어의 번역이 아닌 일본에서 특정 상품에 붙여진 명칭이 일반화된 것이다(寺西五郎 1962, 245). 마호병은 19세기말 A.F.Weinhold라는 사람이 발명하였다고 전해지는데 그 원형에 개량을 거듭하여 이를 상품으로 완성한 것은 영국의 Sir James Dewar였다. 마호병은 저온 보존보다는 반대로 고온 보존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물질을 차게 보존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보존할 필요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듀워는 마호병을 상품으로 파는데 있어 thermos flask 즉 열병으로 명명하였고, 영어로는 그 후 flask를 생략하고 thermos만으로 마호병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그의 이름을 따서 듀워병으로도 통용되었다(寺西五郎 1962, 246-247).

마호병은 1909년 이후에 일본으로 수입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처음에는 저온 보존이 목적으로 용도 또한 학술적이었다. 그러나 마호병의 보급되는 속도는 빨랐고, 동시에 저온 목적이 보온 목적으로 중점이 넘어갔고 농촌에도 보급되면서 마호병은 일반명사화 되었다(寺西五郎 1962, 248). 영어로는 thermos 외에 vacuum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vacuum flask나 vacuum bottle, 때로는 약칭으로 vacuum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칭은 마호병의 이중병 사이의 진공에서 온 것으로 이것은 thermos와는 처음부터 다른 보통명사라 할 수 있다(寺西五郎 1962, 248).

이것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마호병 명명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동경제국대학 교수인 飯島魁의 발언에서 “매우 불가사의한 병, 마법병”이고, 또 하나는 伊藤喜商店의 창업자인 伊藤喜善之助

가 명명한 선박상품의 동경憧憬에서 온 “마법사의 병, 마법병”이다. 어느 쪽이 정설이건 두 설의 공통점은 불가사의한 병, 마법사의 병이라는 신기한 병이란 의미로 요술이나 마술이 아닌 마법의 병이라는 점이다. 이 마법魔法을 일본어로 まほう:마호라고 읽으며 병瓶이 더해져서 마호병 즉 마법병이 된 것이다.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일본어 그대로인 마호병 또는 마호병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 후 마호병 또는 마호빙은 일본어 사용자제의 영향으로 다른 말(우리말)로 대체되는데 그것이 바로 통칭적으로 사용된 것이 「보온병」이다.

여기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에는 「고온」 보존보다는 「저온」 보전을 중시하던 것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의 상황 상 「저온」보존에서 「고온」보존으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저온 보존기능은 극히 약화되고 고온 보존기능만 부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진 병”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유지하는 병, 즉 보온병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온병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온 기능 외에 보냉 기능이 이면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보온병은 텀블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사용 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동시에 따뜻함을 유지하는 병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어떨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 비롯된, 보다 더 엄밀히 보면 라틴어에서 유래된 Social Security는 일본어인 しゃかいほしょう(샤카이 호쇼)로 변화고 또 다시 사회보장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보온병과 같은 어떤 기능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국가	영국	일본		우리나라		
명명	thermos 듀워병	魔法瓶 (초기)	魔法瓶	마호병	보온병	텀블러
주요기능	고온 보존	저온 보존	고온 보존	고온 보존	고온 보존	저온보존 + 고온보존

〈그림 1〉 thermos-魔法瓶-마호병-보온병-텀블러 명명 및 주요기능

Ⅲ. Social Security의 しゃかいほしょう(샤카이 호쇼: 社会保障)화

일본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는 모든 생활부면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일본국 헌법 제25조 제2항에 사회복지, 공중위생과 함께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심의회는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일명, 50년 권고)」에서 “헌법의 이념과 그 사회적 사실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루라도 빨리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社会保障制度審議會 1950, 30)는 명분으로 “이른바 사회보장제도란 질병, 부상, 분만, 폐질, 사망, 노령, 실업, 다자녀 기타 곤궁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적 방법 또는 직접 公의 부담으로 경제보장의 길툄을 강구하여 생활곤궁에 빠진 자에 대해서는 국가부조에 의해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함과 함께 공중위생 및 사회복지의 향상을 도모하여 이로써 모든 국민이 문화적 사회의 성원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⁵⁾

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일본국 헌법에서는 병렬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는 헌법의 이념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심의회의 정의에서는 사회보장이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국 헌법에서의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에서는 사회보장은 그 의미 또는 범위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국헌법 제25조의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의 유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명문화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기타바(北場勉)는 “일본국헌법의 제정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회보장(social security)가 동법에 규정되기에 이르기까지는 두 가지 국면이 있다. 하나는 맥아더헌법 초안에 social security가 탄생하는 국면이며, 또 하나는 social security가 사회보장으로 번역된 국면이다”(北場勉 2002, 104)라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국면인 social security가 사회보장으로 번역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찰하였다.

1934년 6월8일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제출된 의회 특별교서에서 “정부의 첫 번째 할 일은 개인과 가정에 대한 보장이며, 주택보장, 생활보장, 사회보장의 3대 목표는 정부가 미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한의 약속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겨울에는 우리는 사회보험에 의하여 시민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촉진한다는 대사업에 착수해도 좋다.(This security for the individual and for the family concerns itself primarily. These three great objectives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an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 are, it seems to me, a minimum of the promise that we can offer to the American people. Next winter

5) 원문: 社会保障制度とは、疾病、負傷、分娩、廢疾、死亡、老齡、失業、多子その他困窮の原因に対し、保險的方法又は直接公の負担において經濟保障の途を講じ、生活困窮に陥った者に対しては、國家扶助によつて最低限度の生活を保障するとともに、公衆衛生及び社會福祉の向上を図り、もつてすべての國民が文化的社會の成員たるに値する生活を営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ことをいう。

we may well undertake the great task of furthering the security of the citizen and his family through social insurance.)”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北場勉 2002, 71). 이는 후에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얻은 후, 1935년 8월14일 대통령 서명으로 사회보장법으로 성립되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1935년 6월21일 도쿄아사히신문은 “양로연금법안가결”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상원에서 사회정책 법안을 심의 평결...을 보도하면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Bill)을 사회정책법안으로 표현하였으며, 1935년 8월14일 사회보장법 성립 후 동년 8월28일 보도에서는 “...사회적 보장법안...”으로 표현하였다(北場勉 2002, 73). 그 후 social security를 사회보장으로 표현한 것은 1935년 12월 ILO 도쿄지국에서 발행한 ‘세계의 노동(1935년 12월호)’에 게재된 ‘아메리카합중국의 사회보장법(상)’이 아마도 처음이며, 1936년 1월호에서도 ‘아메리카합중국의 사회보장법(하·완)’을 게재하고 있다(北場勉 2002, 73).

그러나 일본국헌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맥아더헌법 초안에서의 social security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北場勉 2002, 70).

오늘날, 일본국헌법은 1946년 2월13일에 GHQ(연합국사령부)로부터 일본정부에 전달된 ‘맥아더헌법 초안’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것이 명확하다. 맥아더헌법 초안의 해당조항을 보면, 제24조 조문에 「모든 생활범위에서 법률은 사회적 복지,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입안되어야 한다(In all spheres of life, laws shall be designed for the promotion and extension of social welfare, and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라고 쓰여 있다. 여기서 사회적 복지(Social Welfare)는 구체적인 시책으로 5항목을 내걸고 있다. 그 구체적인 항목은 ①무상, 보편적이며 강제적인 교육을 설립할 것(Free, universal and compulsory education shall be established), ②아동의 사리적 착취를 금지할 것(The exploitation of

children shall be prohibited), ③공중위생을 개선할 것(*The public health shall be promoted*), ④사회적 안녕을 제공할 것(*Social security shall be provided*), ⑤노동조건, 임은 및 근로시간의 규정을 정할 것(*Standards for working conditions, wages and hours shall be fixed*)이었다.

맥아더헌법 초안에서는 social welfare를 사회복지가 아닌 사회적 복지로 번역하였고, social security는 사회보장이 아닌 사회적 안녕으로 번역하였다. 이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안녕은 GHQ가 일본정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번역된 것이다.

제38조 모든 국민생활에 관한 법령은 자유의 보장, 정의의 고양 및 공공의 복지 및 민주주의의 향상 발전을 취지로 정할 필요가 있다.

반면, GHQ로부터 맥아더헌법 초안을 넘겨받은 일본정부는 맥아더헌법 초안 제24조의 핵심이 상당하는 부분 제38조에서 사회복지를 공공의 복지로 바꾸었다. 이는 일본측이 의도적으로 맥아더헌법 초안에 있는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안녕의 뜻을 공공의 복지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사토오 다쓰오 1994, p.124 재인용) 이에 대하여 GHQ는 일본측에서 시안이라는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번역을 개시되었고, ‘제국헌법개정초안요강’에서는 제23조에서 “...사회의 복지 및 안녕...”으로 표현되었다. 그 후 제90회 제국의회에 상정된 표현은 제23조에서 “...사회의 복지, 생활의 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생활의 보장이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변경된 배경에는 사회당 제안의 생존권 규정의 삽입을 방지하는 논리로서 생활의 보장이라고 번역된 영어의 social security에는 본래 생존권 보장의 취지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北場勉 2002, 96~101). 동시에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社会的安寧)이 생활의 보장(生活の保障)으로 다시 사회보장(社会保障)으로 변경되었다. 그 변경이유

는 ‘헌법개정사업 진전당시에는 영국에서의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제도안이 우리(일본)국민의 주목을 게을리 하였기’에 ‘이미 보급되어 있던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을 솔직하게 도입한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한다. (北場勉 2002, 71)

즉 Social security는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다른 한편 단순히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1935년 6월과 8월에 도쿄아사히신문에 의하여 미국의 사회보장법안을 사회정책법안을 거쳐 사회적 보장법으로 표현되었으며, 학술지(잡지)에서는 ILO 도쿄지국에서 발행한 ‘세계의 노동(1935년 12월호)’에 아메리카합중국의 사회보장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상으로 볼 때 Social Security는 맥아더헌법 초안이 일본국헌법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사회보장으로 번역 또는 표현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녕, 공공의 복지, 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표현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Social Security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았거나, 또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Social insurance, Social Welfare 등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표기된 맥아더헌법 초안(social security)이 공식적으로 일본어(社會保障)로 번역되었을 때의 표현과 맥아더헌법 초안의 근거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회특별교서의 영문과 일본어로 표현된 용어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IV. Social Security의 숨겨진 기능

본 절에서는 기술既述한 바와 같이 맥아더헌법 초안의 영문 Social Security가 社會保障(샤카이 호쇼오:사회보장)으로 일본국헌법에 최종적으로 일본어로 번역 표현되었는데 두 용어는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와 社會保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맥아더헌법 초안에 social security가 사회보장으로 번역된 것과 일본국헌법에서 사회보장이 명시되는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맥아더헌법 초안 제24조에는 social welfare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를 일본어로 社会的福祉(사회적 복지)로 번역 표현하였으며, 그 사회적 복지는 5가지 내용 중 하나 즉 네 번째로 social security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社会的安寧(사회적 안녕)으로 번역 표현하였다.

맥아더헌법 초안 영문

... In all spheres of life, laws shall be designed for the promotion and extension of **social welfare**, and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 ...

... **Social security** shall be provided ...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어 번역 표현

...有テユル生活範圍ニ於テ法律ハ**社会的福祉**、自由、正義及民主主義ノ向上發展ノ為ニ立案セラルヘシ...

...**社会的安寧**ヲ計ルヘシ...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표현(필자역)

...모든 생활범위에서 법률은 **사회적 복지**,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 발전을 위하여 입안되어야 한다...

...**사회적 안녕**을 제공할 것...

이와 같은 표현은 앞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보장**이라는 용어에서 이미 1935년 12월에는 **사회보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헌법에서의 표현은 **사회적 안녕**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맥아더헌법 초안에서는 사회보장 보다 상위개념이었던 social welfare 또한 사회적 복지라는 표현으로 번역

212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5호 (2021)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social security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social security의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회보장법의 근원이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회 특별교서의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 영문

*This **security** for the individual and for the family concerns itself primarily. These three great objectives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an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 are, it seems to me, a minimum of the promise that we can offer to the American people. Next winter we may well undertake the great task of furthering **the security** of the citizen and his family through **social insurance**.*

일본정부에 의한 일본어 번역 표현

政府の第一の仕事は個人と家庭に対する保障。住宅保障、生活保障、社会保障、の三大目標は政府がアメリカ国民に与えることができる最低限の約束である。本年冬には我々は社会保険によって市民およびその家族の生活保障を促進するという大事業に着手してもよい。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표현(필자역)

정부의 첫 번째 할 일은 개인과 가정에 대한 보장이며, 주택보장, 생활보장, 사회보장의 3대 목표는 정부가 미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저한의 약속이다. 이를 위하여 이번 겨울에는 우리는 사회보험에 의하여 시민 및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촉진한다는 대사업에 착수해도 좋다.

특별교서의 일본어역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security를 보장으로 번역하였다는 점과 3대 목표 즉, the security of the home를 주택보장,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를 생활보장,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를 사회보장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이 띄는 부분이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를 사회보장으로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보장(security)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본 연구가 분석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은 그 원문이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로 원문을 직역하면 사회보험의 보장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지 혹은 파악하고 있는 사회보장이 아닌 사회보험이 3대 축軸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주택보장과 생활보장은 주거보장과 생계보장으로 번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주택보장은 주거보장 보다는 좁은 의미로 주거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기에 단순히 주택만이 아닌 주거전반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를 읽어야 할 것이다. 반면 생활보장은 생계보장보다는 넓은 의미로 그것은 상당히 광범위하여 생활전반(혹은 생활전체)보다는 생계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교서의 보장이란 주거와 생계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는 주거보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무각출제 노령연금, 각출제 노령보험, 실업보험, 요부양아동부조, 시각장애인부조, 모자보건서비스, 장애아서비스, 아동복지서비스 등으로 사회보험과 생계보장 등으로 구성되어있음이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social security가 맥아더헌법 초안에 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맥아더헌법 초안 작성을 위한 제1차안⁶⁾에는 제27조에서 ...In all sphere of life laws shall be designed only for the promotion and extension of social welfare, and of freedom, justice and democracy.(...이하 생략)에서 사회의 복지(일본어 원문은 社会の福祉)로 단독 표시되었으나, 제3

6) 인권에 관한 소위원회의 제1차안 (1946년 2월 8일).

차안(제2차안의 검토)에서 사회의 복지가 포함해야 할 항목으로 provide social security(社会保障を定める立法):사회보장을 제공할 것 _역자역)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北場勉 2002, 80~91). 여기서 social security는 社会的安寧(사회적 안녕)이 아닌 社会保障(사회보장)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한편, 맥아더헌법 초안을 바탕으로 일본정부는 GHQ의 영향 아래에서 일본국헌법 개정작성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맥아더헌법 초안에서의 social security는 번역과정에서 사회적 안녕이 사회보장으로 표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국헌법에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았다.

일본국헌법의 최초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를 공공의 복지로 변경하였는데 이것은 맥아더헌법초안의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안녕의 의미를 포함하고자 하는 의도였다(北場勉 2002, 96). 그러나 「제국헌법개정초안요강」에는 “法律ハ有ラユル生活分野ニ於テ社会ノ福祉及安寧、公衆衛生、自由、正義並ニ民主主義ノ向上發展ノ為ニ立案セラルベキト(법률은 모든 생활분야에서 사회의 복지 및 안녕, 공중위생, 자유, 정의 및 민주주의의 향상 발전을 위해 입안되어야 한다(필자역))” 사회의 복지 및 안녕으로 수정되었다. 이것은 다시 추밀원樞密院에서 (사회적) 안녕이 생활의 보장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일본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北場勉 2002, 99).

이 안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사회당에서 새로운 일본국헌법에 생존권 규정을 삽입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이것을 계기가 되어 생활의 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social security)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다. 그 변경의 배경에는 사회당 제안의 생존권 규정의 삽입을 방지하는 논리로서 생활의 보장의 번역된 영어인 social security에는 원래 생존권 보장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北場勉 2002, 100~101).

정리하면, social security는 맥아더헌법 초안에서는 사회적 안녕에

서 사회보장으로 표현이 변경되었으며, 일본국헌법에서는 맥아더헌법 초안에서의 social security가 사회보장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안정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국헌법의 사회보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회 특별교서에서 목표로 한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을 포함하는 보장(security)과 거의 유사한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특별교서에서 生活保障(생활보장,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으로 번역된 생활보장은 맥아더헌법 초안이나 일본국헌법 개정초안에서 표현된 社会的安寧(사회적 안녕, social security)이나 生活の安定(생활의 안정, social security)과는 내포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일본국헌법에 명시된 社会保障(사회보장)은 표현(혹은 용어)을 社会保障(사회보장)으로 하였을 뿐, 실제의미는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을 포함하는, 다만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회적 안녕 혹은 생활의 안정 또는 생활안정 등등 달리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V. Security & Warranty & Guarantee

그렇다면 안녕, 안정, 보장 등으로 해석된 security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며,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유사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용어인 warranty와 guarantee에 대하여 그 의미와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자.

먼저 security의 사전적 의미는⁷⁾ 일반적으로 안전, 무사, 안심, 안도, 방어, 보증, 담보, (국가의)안전을 보장하는, 방위에 관한 등으로 해석된다. security의 어원은 중세 영어로 고대 프랑스어 securite 또는 라틴어 securus 에서 유래된 free from care(걱정이 없는)이란 뜻이다. 라틴어 securus는 se=without(~없는, ~없이), cura=care(근심, 걱

7) 뉴에이스 영한사전.

정)로 근심 혹은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⁸⁾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미국),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영국)에서 security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the state of being free from danger or threat.*(미국, 영국)
- ② *a thing deposited or pledged as a guarantee of the fulfillment of an undertaking or the repayment of a loan, to be forfeited in case of default.*(미국, 영국)
- ③ *(often securities) a certificate attesting credit, the ownership of stocks or bonds, or the right to ownership connected with tradable derivatives.*(미국, 영국)
- ④ *a private police force that guards a building, campus, park, etc.*(미국)

본 연구의 취지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첫 번째의 “위험 혹은 위협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확대하여 보면, 두 번째(말겨진 일의 수행 또는 론의 변제의 담보로써 잡은 것(디폴트의 경우에는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종종 증권) 신용을 증명하고 있는 증명서, 주식 또는 채권의 소유 혹은 소유에 대한 권리는 거래 가능한 파생물로 이어져 버린다), 네 번째(건물, 캠퍼스, 공원 등의 방어하는 사적 경찰)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security란 위험 혹은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위험 혹은 위협은 각각 내부(체제 안)와 외부(체제 밖)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수행(체제 안팎의 위험이나 위협을 없애는 주는 일)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담보(세금 또는 사회보험료_필자 해석)를 요구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담보가 없는

8)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미국),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영국)
원문 : late Middle English: from Old French securite or Latin securitas, from securus 'free from care' (see secure), mid 16th century (in the sense 'feeling no apprehension'); from Latin securus, from se- 'without' + cura 'care'.

상태 즉 납세(또는 사회보험료)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security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가능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security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warranty를 들 수 있다. warranty의 사전적 의미는⁹⁾ (품질 등의)보증, 보증서, 토지에 관한 권리를 보증하는 날인 증서 계약, 정당한 이유, 권한, 인가, 영장 등으로 해석된다. warranty의 어원은 앵글로노르망 프랑스어의 warantie로 garantie(보증을 보다)의 변형으로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미국),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영국)에서 warranty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a written guarantee, issued to the purchaser of an article by its manufacturer, promising to repair or replace it if necessary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제조사(국가)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필요에 따라 수리 또는 교환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보증을 일컫는다. 즉, 제조사(국가)가 지정된 기간(일정 기간 또는 생애에 걸쳐서)에 한하여 구매자(국민 또는 주민에게)에 대하여 (생활상의)문제가 발생 시 무료(구매자의 추가 부담 없이 = 국민이라는 이유만)로 품질보장(수리 또는 교환 =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security와 유사한 또 다른 용어로 warranty의 해석 안에서 나타나 있듯이 guarantee를 들 수 있다. guarantee의 사전적 의미는¹⁰⁾ 우리말로는 연예인 등의 출연료로 영어의 a performance fee를 한국식 영어표현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품의) 보증, 애프터 서비스¹¹⁾, 보증, 보증이 되는 것, 채무 보증, 담보, 보증인,

9) 뉴에이스 영한사전.

10) 뉴에이스 영한사전.

인수인, 피보증인, (책임 없는) 약속 등으로 해석된다. guarantee의 어원은 스페인어인 garante는 프랑스어의 garant(영장을 보이다)와 일치하여 프랑스어의 garantie에 의하여 ‘보증’으로 후에 영향을 주었다.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미국), Oxford Dictionary of English(영국)에서 guarantee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noun. ① *a formal promise or assurance (typically in writing) that certain conditions will be fulfilled, especially that a product will be repaired or replaced if not of a specified quality and durability:*

② *(also guaranty) Law a formal pledge to pay another person's debt or to perform another person's obligation in the case of default.*

verb. *provide a formal assurance or promise, especially that certain conditions shall be fulfilled relating to a product, service, or transaction*

명사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는 공식 약속 또는 보증(일반적으로 서면), 특히 지정된 품질과 내구성이 없는 경우 제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한다는 약속이며, 동사로는 특히 제품, 서비스 또는 거래와 관련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보증 또는 약속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국가로부터 지정된 품질(특정 조건 = 생활상의 안정에 대한 약속)과 내구성이 없는 경우 제품(생활상의 안정이 부족한 경우)을 보장(수리하거나 교체 = 다시 생활상의 안정에 대한 약속)한다는 일부 책임 없는 약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security, warranty, guarantee는 보증이라는 용어로의 해석이 공통적으로 가능하나 각각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차이를 보

11) 영문으로는 after sales service로 일본어로 アフターサービス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반면, 국가와 국민 간의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는 하겠다. 여기서 만일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적 안녕 혹은 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약속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민 혹은 주민(수급자 혹은 이용자)은 국가(공급자)로부터 security, warranty, guarantee 중 어느 쪽의 보장 혹은 보증을 받아야 할 것인가? 국민이 국가에 안녕의 보장 혹은 보증을 요구할 때 그 강약強弱은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일반적 사용하고 있는 의미로는 warranty - security - guarantee 순이며, 어원을 포함한 원래의 의미는 security - warranty - guarantee 순이 아닐까 사료된다.

필자는 security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보장, 보증, 안녕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크게 national security와 social security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national security는 안전보장이며, social security는 사회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이 사회복지와 혼동 또는 혼용되고 있는 현재, 그 원어인 social security가 社會保障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안착되는 과정에서 그 뜻과 의미가 충분히 전달 내지는 내포되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정의에 대한 재정립이나 다른 용어로의 대체가 필요불가결하지 않을까?

VI. 나가면서

본 연구는 사회복지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사회보장이란 용어의 의미 혹은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유사한 용어인 사회복지와 혼용 또는 혼동된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 중인 사회보장의 차용어인 일본어 샤카이 호쇼(社會保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 샤카이 호쇼 또한 영어인 social security에 여러 과정을 거쳐 정립되었음을 기타바(北場勉)의 연구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다만, 일본은 영어인 social security의 그 의미와 내용 등을 명확히

이해코자 社会的安寧(사회적 안녕), 생활의 안정(生活の安定) 등 복잡한 양한 과정을 거쳐 社会保障(사회보장)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일본어인 社会保障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내용과는 별개로 단순히 음독으로 사회보장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로 인하여 현재에도 여전히 본 연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사회복지와 혼용 또는 혼동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가 일본어를 차용하는 과정에서의 큰 오류의 예로 텀블러 & 보온병(保溫瓶) & 마호병(魔法瓶)의 예를 들었다. 즉 thermos flask 또는 vacuum flask나 vacuum bottle가 고온보존기능 중심에서 일본으로 들어와 일본의 필요상황에 따라 저온보존기능에서 고온보존기능을 중심으로 변하였고, 그 명명과정에서 마호병(魔法瓶)으로 사용한 것이 우리나라로 그대로 차용되는 과정에서 본래의 기능 중 저온보존기능이라는 일부기능을 잃은 채 보온병(保溫瓶)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 보온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고온보존기능에 더하여 예전에 잃어버렸던 저온보존기능을 되찾은 텀블러라는 새로운 용어와 혼용 또는 대체되며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사회보장법의 근원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회 특별교서에서 언급된 보장(security)은 맥아더헌법 초안(social security—社会的安寧—社会保障)을 거치고 일본국헌법(公共の福祉—社会的安寧—生活の安定—社会保障)을 거쳐 우리나라 사회보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거(혹은 주택)보장이 생략되고 생계(혹은 생활)보장과 사회보험의 보장만이 남아 현재의 사회보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임을 밝힌다.¹²⁾ 즉, 생계보장은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의 형태로, 사회보험의 보장은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마호병이나 보온병이 그랬듯이 일부의 기능(저온보존)을 상실했듯이 사회보장은 그 잃

12) 다만 여기서 생활보장은 일본국헌법의 중간과정에 언급된 생활의 안정과는 다름은 이미 본문에서 밝혔다.

어버린 기능 즉, 주거보장을 상실한 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사회보장으로 존재하고 있다. 주거보장 외에도 숨겨진 혹은 상실된 또 다른 기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 또한 후속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보장(security)이란 국민(또는 주민)에 대한 생명을 지켜주는 것으로 크게 national security와 social security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즉, security는 national security는 체제 밖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며, social security는 체제 내로부터의 사회보장(혹은 생활보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였고, 먼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시작으로 국가적 지원을 행하여 왔으며, 훗날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국가적 지원을 행하며 소위 사각지대로 일컫는 부분을 메꾸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공공부조를 더하였고, 또 다른 국가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을 더하여 사회보장을 완성하였다. 반면 사회주의 국가는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국가 또는 사회책임 하에 이루어짐으로 공공부조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부조 용어의 대체용어로 사회보장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사회보장의 의미를 자본주의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과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사회보장은 용어는 같으나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초기자본주의 의에서 수정자본주의)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 불가결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혹은 다른 대체어의 탐색은 향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유광호.1986. “사회보장의 개념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vol.1), 1-23.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전호성, 2018. “통일대비, 사회보장권적 기본권차원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문제제기 -법 제26조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3호, 133-155.
- 전호성, 2016. “일본의 '사회보장' 개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 재구축 방안 연구(1).” 『일본문화학보』(69), 315-332.
- 전호성·이홍직. 2016. “저출산고령사회시대 위기대응 차원에서 본 전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정의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법제연구』 제7권 제1호, 29-44.
- 전호성·이홍직·김영미·이선영.2015. 『사회서비스 제공 시설 분류체계 개편 연구』, 보건복지부.
- 전호성 역. 2011. 『왜 사회보장인가?:자본주의 사회보장의 일반이론』. 서울: 도서출판 치우.
- 田多英範.2007. 『現代日本社会保障論』. 光生館.
- 田多英範.2009. 『日本社会保障制度成立史論』. 光生館.
- 社会保障制度審議會.1950. 「社会保障制度に関する勧告」 p.30.
- 寺西五郎.1962. 『語理語源』. 雪華社.
- 北場勉.2000. 『戦後社会保障の形成 社会福祉基礎構造の成立をめぐって』. 中央法規出版.
- 北場勉.2002. “日本国憲法における「社会保障」の誕生.” 『日本社会事業大学研究紀要』 第49集, 69-10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대한민국헌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투고일 : 2021년 8월 30일 . 심사일 : 2021년 9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10월 1일

* 전호성은 일본 죠찌(上智)대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임. 저/역서로는 '우리나라가 만일 100 명의 마을이라면', '왜 사회보장인가?' 등이, 연구논문으로는 "일본 아동수당 제도의 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방향성 연구" 등이 있다.

<Abstract>

Acceptance and transformation of Japanese social security trends, implications in Korea

Jun, Ho-sung
(Kangnam University)

The In Korea, the definition and category of the term social security is not clear and is used interchangeably or confused with the term social welfare. In Japan, the term social security was used in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which was established as social security through the guarantee of social well-being and living of the draft MacArthur constitution. The social security of the draft MacArthur Constitution is listed as one of the specific policies of social welfare. Under the constitution, social security was changed from social well-being to public welfare (including social welfare), and finally it was expressed as social security. The Japanese Constitution, the draft MacArthur Constitution, and the special text of the Roosevelt Congressional Assembly, the birthplace of the American Social Security Act, describe security as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According to this, social security is housing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and social insurance.

Keywords : social security in KOREA, social security in JAPAN, social welfare, rights, social well-being, social well-living